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시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시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보험가입증명서사본,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나 체육시설(학원)등록·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유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01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되었다는 승인을 받고 (자동차 대리점에서 어린이버스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미 이러한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별도 자동차 검사소 방문은 불요),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차량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정지표시장치·표시등·광각실외후사경·하차확인장치·후방카메라 (또는 후방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 '튜닝세부업무규정' 참조

## 02

###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변경 승인 절차가 궁금한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구조·장치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구조·장치 변경 작업을 한 뒤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03

#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 (처벌규정 포함)

### 통학버스 운영자

신고 후 운행 (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동승보호자 동승 (법 제53조제3항)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원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 (법 제53조제1항)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 후 출발 (법 제53조제2항)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통학버스 운행종료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 (법 제53조제4항)	
통학버스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 (법 제53조제5항)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 일반차량 운전자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차로는 일시정지 후 서행 (법 제51조제1항)	승합차 기준 범칙금 10만원 벌점 30점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 (법 제51조제2항)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법 제51조제3항)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차량 운전금지 (법 제52조제4항)	범칙금 3만원

### 교육 이수

<b>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법 제53조의3)</b> ※ 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운전하기 전 - 정기 안전교육 : 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와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	---------------------------

## 어린이통학버스 자율신고 안내

# 어린이통학버스 자율신고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어린이가 탑승하여 운행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고, 동승보호자는 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행 중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어린이 승하차 시에는 차량의 점멸등을 작동시킵니다.
- 승차 시에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는 안전띠(적합하게 조절되지 않을 시에는 유아보호용장구 착용)를 착용시킵니다.
- 하차 시에는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운행합니다.
- 운행 종료 후에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 후, 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함께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신청한 뒤 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 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신고 시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자율신고 안내

### 신고의무 교육시설이 아니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신고의무 교육시설이 아니어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증명서를 발부받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자율신고하게 되면 관련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자율신고하게 되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율신고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어린이 교육시설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농구·야구 교실이나, 교습소, 해동검도, 특공무술,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해당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 저희는 축구교실인데, 신고의무 대상인가요?



체육시설의 신고의무 대상은

- 등록 체육시설업 3종(골프, 스키, 자동차경주장업)과
- 신고 체육시설업 12종(요트, 조정, 카누, 빙상, 승마,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이며,
- 체육도장에는 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레슬링, 우수 등 6개 종목이 해당되며, 합기도도 곧 포함될 예정입니다. 축구교실은 신고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 자율신고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행하게 되면 다른 혜택은 없나요?



다른 모든 차량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에는 일반자동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모든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